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이용희 소유물건(2026타경50782)
의 뢰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
감정평가서번호:		s-경-2026-063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박)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한 창 수

감정평가액	칠천육백육십칠만원정(₩76,670,000.-)			
의 뢰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이용희 (2026타경50782)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8.06	2026.07.06 ~ 2026.08.06	2026.08.1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선박	1척	선박	1척	-	76,670,000
	이	하	여	백	
합 계					₩76,67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에 관한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무동력선 덕신호, 어선번호 9708001-6497107(선체;FRP 6.67 G/T)인 어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경매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3. 감정평가방법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선형, 구조, 형식 및 재질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각각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고, 감가수정은 현상, 관리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장래보존연수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4. 실시조사 및 실시조사 내용

실시조사일은 2026.07.06 ~ 2026.08.06까지 대상선박의 종류 및 용도, 선체의 제반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08.06일을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6. 그 밖의 사항

- 대상 어선에 대한 물적 확인은 제시목록상 대상 어선의 검사증이 제시되지 않아, 어선원부와 소관청에 구두확인, 외관에 의한 육안 조사결과 내용연수 만료된 무동력 어선으로 관리상태 열악한 상태입니다.

- 선체의 규격, 용량은 어선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육안 조사에 의하고, 대상 어선은 경제적 내용연수 상당 기간 초과된 상태이므로, 조선소에 대체 건조 신청한 선박인지 여부 미상이고, 향후 선체를 폐선하여야 할 경우는 행정상의 절차 및 폐선에 드는 비용 등이 상당하므로 매수신청인은 경매 참여시 특히 유의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에 관한의견

- 대상 어선의 어업허가 종류는 연안복합어업(6.67톤)으로 허가 기간은(2024.01.01 ~ 2028.12.31)으로 소관기관에 방문 구두 확인(개인정보로 문서 확인은 불가함)하였으나 상세내역은 미상이고, 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은 2019.03.05 ~ 2024.03.04(MTIS,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까지로 조사하였으므로, 매수신청인은 경매참여시 소관청에 상기 어업허가 사항과 선박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한 사항과 현재 어선 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은 미상이므로 매수신청인은 경매 참여시 유의 바랍니다.

- 어선에 대한 소관청의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허가)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은 권리로서, 어업허가권만이 어선과 별개로 감정평가 관련법상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어선 승계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제4항에서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가 가능하고, 어선거래 시장에서도 어선에 포함되어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 관행이 있으므로, 선박가액과 어업허가권만의 가액도 별도 구분평가하였으므로, 어선과 어업허가권의 일괄 경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경매업무 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에 관한의견

Ⅱ. 선박가액의 산출 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대상 선박을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주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선박의 개요

기호	선박명	산박의 용도	진수일	총 톤수	주기관
1	덕신호	어선 (연안복합)	1997.07.04	6.67톤	무동력선

※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에 의함

3. 재조달원가 결정

(1) 선박 신조 단가 수준

1) 선체 부분

구분	선질	신조단가(G/T) 단위;원)	비 교
연안허가 어선	FRP	4,800,000 ~26,000,000	선주 옵션 제외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박감정평가자료집 어선의 신조 단가(2023년 01월 01일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에 관한의견

(2)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용 도	선종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감가율	잔존가치율
어선	합성수지선 (F.R.P)	15년	정률법	0.152	10%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박감정평가자료집

(3) 재조달원가의 결정

상기 건조 단가와 신조가액 수준을 참작하고, 대상 선박의 선질, 선형과 규모, 구조 및 부대설비의 구비 정도, 성능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합니다.

구 분	용 도	구 분	재조달원가	비 고
1	어선 (연안복합)	선체	20,000,000	단위; G/T 기타 선체 부착 부대시설 일체 포함

4. 감가수정

대상 어선의 감가수정은 정률법에 의하되, 어선 선체의 경제적 내용년수는 통상 20년을 적용하나 대상 어선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현재 어선으로 기능이 낮아 잔존가치를 5%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5.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선박의 시산단가 산출

기호	어선 명칭	구분	내용 년수	경과 년수	잔존 년수	산출단가	시산단가	비고
1	덕신호	선체	20	29	0	20,000,000 x 0.05 (0/20)	1,000,000	경제적 내용연수를 상당기간 초과되어 잔존율를 조정함.

(2) 대상 어선의 시산가액

기호	어선 명칭	구분	수량	단가	시산가액	비 고
1	덕신호	선체	6.67G/T	1,000,000	6,670,000	기타 선체 부착 부대시설 일체 포함
		합계			₩6,670,000	

6. 유사 어선 선체의 참고 가격수준

(1) 어선 선체 감정평가 사례

기호	용도	선체	톤수 (G/T)	진수일	단 가(원)	기준시점	감정평가 목적
a	어선	FRP 선박	4.2	2009. 06.22	선체, 16,000,000	2026.08.05	법원 경매
b	어선	FRP 선박	2.99	2011. 07.01	선체, @3,560,000	2026.07.31	법원 경매
c	어선	FRP 선박	9.77	2009. 03.27	선체, @6,275,000	2026.07.22	법원 경매
d	어선	FRP 선박	3	2021. 07.19	선체, @13,400,000	2026.07.20	법원 경매

7. 어업허가권의 감정평가사례

기호	허가어업 종류	톤수 (G/T)	허가기간	감정평가액 (원)	기준시점	감정평가 목적
A	연안복합어업 여수시	1.99	2024.01.01 ~2028.12.31	40,000,000	2026.08.03	법원 경매
B	연안복합어업 고흥군	2.55	2024.01.01 ~2028.12.31	46,000,000	2026.06.30	법원 경매
C	연안복합어업 여수시	9.77	2024.01.01 ~2028.12.31	90,000,000	2026.06.09	법원 경매
D	연안복합어업 완도군	9.77	2024.01.01 ~2028.12.31	90,000,000	2026.03.31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에 관한의견

8. 어업허가권의 감정평가액 결정

어업허가권은 어선이 가지는 특수성과 어선거래 당사자의 내부 거래로, 거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거래로 인하여 거래사례 포착이 곤란하나 인터넷 어선거래 정보, 어선 거래업체의 탐문 조사 결과 등을 참작할 때 동종 어업허가권의 감정평가액을 70,000,000원로 결정합니다.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

구 분	종 류	규 격	감정평가액(원)	비 고
무동력선 덕신호	선 체	6.67톤	6,670,000	@20,000,000원 x0.05(0/20) 부대시설 포함
	어업허가권 (연안복합 6.67톤)	1식	70,000,000	비준가액
합 계			₩76,670,000.-	

2.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②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은 물건의 특성상 곤란하므로, 선체는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어업허가권은 거래 사례가격수준, 동종 어업허가권의 감정평가사례, 동종 어업허가권의의 시장가격수준, 동종 어업에 대한 정부의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준가격 등을 종합 고려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s-경-2026-0630-1

선박 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무동력선 덕신호	선박번호	9708001-6497107	선 적 항	여수시 국동항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평 가 액		산 출 근 거
		단 가	금 액	
선 체	6.67 G/T	1,000,000	6,670,000	20,000,000x0.05(0/20)
기 관	- HP	-	-	-
의 장 품	- 점	-	-	-
합 계			₩6,670,000.-	

선 박 의 내 용

선체	종 류	무동력선	선 형	-		척 도	
	용 도	어선	총 톤 수	6.67	G/T	길이 :	10.20 M
	등 급	-	순 톤 수		N/T	폭 :	3.20 M
	선 질	FRP	적화톤수		DWT	높이 :	- M
	선 창	-	조 선 소	명성FRP조선소		비 고	
	객 실	-				-	
	승무원실	-	건조년월일	-			
	조 선 지	-	진수년월일	1997.07.04			
기관	종 류	-	기 통 수	-	CYL	제 작 소	
	실 마 력	- HP	회 전 수	-	RPM	-	
	공칭마력	- HP	기 통 경	-	m/m	제조일자 및 번호	
	형 식	-	행 정	-	m/m	-	
	속 력	-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류 및 수량	-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s-경-2026-0630-1

어업허가권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어업권의 표시	어장의 면적		평 가 가 액		비 고
		공부	사정	단 가	금 액	
1	연안복합 허가권 - 어선번호 9708001-6497107 - 허가기간 2024.01.01 ~ 2028.12.31 - 허가번호 여수시 2024-00808	1식	1식	-	70,000,000	비준가액
	합 계				**₩70,000,000.-**	
	이	하	여	백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2) 기관의 현황 (3) 의장품의 현황
(4) 운항사항 (5) 실사장소 (6)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 현황

선질 FRP 선체로서 관리상태 불량합니다.

(2) 기관의 현황

해당 없음.

(3) 의장품의 현황

해당 없음.

(4) 운항사항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검사증 유효기간이 2019-03-05부터 2024.03.04까지로 운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5) 실사장소

여수시 국동항에서 실사하였음.

(6) 기타 참고사항

대상 어선은 현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 보이고, 현 운항이 곤란한 실정으로, 향후 폐선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 요함.

선박 보관장소

소 재 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64외

사 진 용 지



대상 어선 모습



대상 어선 갑판 모습

사 진 용 지



대상 어선 갑판 모습



대상 어선 선수 측면부

사 진 용 지



어선 선실 모습



어선번호

회 보 서

우)58161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선하동길 48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61-372-7160
E-Mail : search1@KAPALAND.CO.KR FAX. 062-443-7167

문서번호 : s-경-2026-0630-1

시행일자 : 2026-08-10

수 신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

참 조 : 경매4계

제 목 : 감 정 의 뢰 에 대 한 회 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저희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6.30자 귀 제 『2026타경50782』 호로 의뢰하신 『무동력선 덕신호 9708001-6497107(2026타경50782)』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3. 공부자료 각 1 부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61-372-7160, FAX: 062-443-7167)

문서번호 : s-경-2026-0630-1

수 신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구형근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6.30 자 귀 제『 2026타경50782 』 호로 의뢰하신『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64외 』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290,000	기본수수료 ≒290,000
실비	여 비	149,2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	
	기타 실비	-	
	소 계	149,2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439,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43,900	
합 계		482,9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482,900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 : 301-3318-7167-01(예금주:한창수(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